

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6. 11.(금) 16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 (4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(2010-36-141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, 2010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(330개 방송국)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.

※ 「심사항목 및 배점」에 관한 설명 내용 중 “비계량 지표의 세부심사항목에는 계량평가요소 포함, 특히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관련 세부심사항목은 계량적 평가요소 강화”를 “비계량 지표의 세부심사항목에는 계량평가요소 포함, 특히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관련 세부심사항목은 **방송법 제5조와 제6조를 반영하여** 계량적 평가요소 강화”로 수정

○ 주요 내용

① 심사위원회 구성

-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,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·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

② 심사항목 및 배점

심 사항 목	평가지표	배 점
1.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	계 량	400점
2.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	계 량	감점
3. 기타 재허가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	비계량	50점
4.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	비계량	150점
5.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	비계량	50점
6. 경영의 적정성	비계량	50점
7. 재정 및 기술적 능력	비계량	50점
8.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	비계량	50점
9. 시청자 권익보호	비계량	75점
10.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기여	비계량	75점
11. 디지털전환 추진실적 및 계획, 경영자의 조직관리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	비계량	50점
계		1,000점

※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, 심사 후 심사 결과 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 예정

※ 비계량 지표의 세부심사항목에는 계량평가요소 포함, 특히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관련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법 제5조와 제6조를 반영하여 계량적 평가요소 강화

③ 재허가 여부 결정

-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'재허가'를 의결하고,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'조건부 재허가' 또는 '재허가 거부'를 의결
-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%에 미달하여 해당 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거나,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(서약서 등)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

사. 보고사항

1)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방송사업의 소유·경영 개선 및 시청점유율 제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(09. 7. 31)에 따라 마련된 「방송법 시행령」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 부터 보고 받음.

○ 주요 내용

①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(신설, 제52조의3)

-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시 일간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의 매체특성,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,
-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의 경영, 주식(지분) 소유 정도에 따라 반영비율을 정하도록 규정

②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(신설, 제52조의4)

- 시청점유율 산정기간,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합산기준, 시청점유율 조사 시 고려사항,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,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고시 위임 내용을 규정

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범위 명확화(개정, 제21조의4)

-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중에서 '방송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'를 '미디어다양성 교육 계획 수립'으로 변경

④ 시청점유율 위반에 따른 방송사업 소유 제한(신설, 제52조의5 및 6)

-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 조치 등 방송사업 소유제한 유형을 정하고,
- 주식 또는 지분이나 자산 매각 조치의 방법, 소유제한 조치의 이행 기간 등에 대해 규정

- ⑤ 시청점유율 위반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(신설, 제52조의7)
 -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의 시청점유율 1% 초과 당, 주 채널의 방송광고를 매월 하루 금지하는 등의 방송광고 제한 기준을 규정
- ⑥ 시청점유율 위반에 따른 방송시간 양도(신설, 제52조의8 ~ 제52조의10)
 -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의 방송시간 양도 기준, 방송시간을 양도 받을 사업자(제3자 방송사업자) 선정, 제3자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비 보장 등에 대해 규정
- ⑦ 시청점유율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시 제재(개정, 별표1)
 - 소유 제한 위반과 같이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시 업무 정지 6개월 또는 허가·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
- ⑧ 방송광고 건수 규제 개선(개정, 제59조)
 - 법령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의 건수 규제를 삭제
- ⑨ 외주제작 편성비율 기준을 '반기'로 조정(개정, 제58조)
 - 외주제작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 기준을 '분기'에서 '반기' 단위로 변경
- ⑩ 1개 국가 외국제작물 의무편성 비율 기준 개선(개정, 제57조)
 - 1개 국가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기준을 '분기' 단위에서 '반기' 단위로 조정
- ⑪ 편성비율 산정시간 기준 등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 마련(개정, 제50조, 제57조, 제58조)
 - 프로그램 분류 기준, 편성시간의 산정 방식 등 편성비율 규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
- ⑫ 소속기관 업무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(개정, 제68조)
 -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, 광고법규 준수 여부, 방송내용의 기록·보존 여부, 방송 실시 결과의 제출 여부에 대한 관리·감독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속기관장(중앙전과관리소장)에 위임
- ⑬ 전송선로설비 이용료,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 신고 규정의 법령화(신설, 제63조의2)
 - 전송선로설비의 이용료 등에 관한 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를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등 이용조건 약관 신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

⑭ 특수관계자 범위의 준용(개정, 제3조제5항)

-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에 적용

⑮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자구 수정(개정, 제69조 관련 별표4)

- 시행령 별표4 제10호 다목 중 '제59조제1항제1호나목'을 '제59조제2항제1호나목'으로 자구 수정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.

6. 폐 회 (17:05)